

전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담당변호사 우승원)

피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담당변호사 정용)

변론 종결 2022. 8. 10.

판결 선고 2023. 1. 11.

주 문

1. 소외 망 C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위 C와 피고 B 사이에 같은 부동산 중 8/10 지분에 관하여, 위 C와 피고들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9.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피고 A에 대하여는 26,342,969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105,371,874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는 26,342,969원, 피고 B는 105,371,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1의 가항에는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의 나항의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그 한도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1. 8. 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297,5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8. 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D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와 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률¹⁾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 및 그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약정서 제3조 제3항, 제10조).
- 3)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년부터 매년 7월경 D 및 망인의 신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였으며, 위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8. 7. 27.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D가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합계 294,484,8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의 처분행위 등

1)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토지 중 망인의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5. 1. 소외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10. 1. 자신 명의로 2019. 9. 30. 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9. 9. 30. 이 사건 건물 중 2/10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A에게, 8/10 지분을 자녀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고(이하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9. 10. 1.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들은 2019. 10. 1. 소외 조합 앞으로 2019. 9. 30.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

1) 한편 망인이 2020. 2. 21.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1553호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 피고들은 위 소송계속 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8. 1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2020느단50107).

2) 위 법원은 2021. 6. 2. '망인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상금 등의 액수는 합계 222,321,743원3) 및 그중 원금 217,069,565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고, 위 구상금채무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G는 해당 상속지분(2/15)에 따라, 피고들을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나머지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해당 상속지분(피고 A 3/15, 피고 B 및 나머지 자녀들 각 2/15)에 따라 각 분할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피고들 및 위 나머지 자녀들 중 H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D가 2020. 5. 26.부터 2021. 7. 1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합계 71,200,000원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등에 충당되었고, 위 2021. 7. 19. 자 기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잔액은 131,714,843원이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정한 보증기한은 2012. 8. 1.까지일 뿐 아니라, 망인은 D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었음에도 등기상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6. 11. 25. D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적어도 그 무렵 위 연대보증약정은 해지되었으며, ② 망인은 원고의 대위변제 전인 2018.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후인 원고의 2018. 7. 31. 자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가)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최초 보증기한이 2012. 8. 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 11. 25. 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망인과 D의 신청에 따라 매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8. 7. 27.까지 연장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등 참조), 망인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인 D의 E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인바, 망인이 피고들 주장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고와의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원고에게 D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은 그 퇴임 후인 2017. 7. 21.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2018.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소외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위 신탁계약이 아닌,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망인의 무자력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한정승인 신고 당시 피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상속재산목록에는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가 적극재산보다 약 57억 원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2019. 9. 30.)과 망인의 사망일(2020. 2. 21.)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5개월에 불과한 점, 다만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위 상속재산목록의 소극재산에는 위 각 증여계약 당시에는 망인이 부담하지 않았던 채무가 포함되어 있고(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채무), 그 무렵 실제 채무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나머지 소극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성 및 망인의 사해의사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들이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각 증여일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망인이 2019. 9.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은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채무자인 D와 공동 연대보증인인 J의 자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들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증여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여기서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시까지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그 자녀로서 망인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각 증여계약 전인 2018. 7. 23. 망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K건물 L호4)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93,250,000원으로 한 가압류를 마치고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소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외 조합 명의의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물반환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 ②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부동산의 시가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③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배상할 가액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 5. 4. 기준 시가는 2,483,333,333원⁵⁾ 이고,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2017. 3. 30. 자 및 2017. 6. 16. 자 각 공동근저당권(채무자 M)의 채권최고액은 240,000,000원 및 1,500,000,000원, 2019. 9. 30.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200,000,000원 및 9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시가에서 위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1,383,333,333원이고, 위 피담보채무액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 시가에서 위 각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공제한 743,333,333원 이상일 것으로 추인된다⁶⁾ .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2021. 7. 19. 자 원고의 망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131,714,843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별 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 즉 피고 A의

경우 26,342,969원(= 131,714,843원 × 2/10,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B의 경우 105,371,874원(= 131,714,843원 × 8/10)을 한도로 한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피고별 피보전채권의 액수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금액이 적은 전자를 한도로 하여 취소 및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10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같은 건물 중 8/10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는 26,342,969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105,371,874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26,342,969원, 피고 B는 105,371,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현

판사박은혜

판사김민재

별지

1)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로서, 원고는 2019. 4. 1.부터 그 요율을 연 10%에서 연 8%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당초 망인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망인의 소 제기 전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위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① 대위변제금 잔액 217,069,565원(= 대위변제금 294,484,863원 - D가 2020. 3. 10.까지

변제한 돈 중 대위변제금의 원금에 충당된 77,415,298원), ② 위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77,415,2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각 원금변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합계 5,211,208원, ③ 위약금 40,970원의 합계액이다.

4) 갑 제7호증 기재 상속재산목록 중 적극재산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1이 대출 무렵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 6. 9. 기준 시가(2,980,000,000원)를 2021. 5. 4. 기준으로 재사정한 가액이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와 같이 계산한다.